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 7. 12. ~ 7. 1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1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usrud141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963호
----------	--------

발의연월일 : 2023. 7. 7.

발의자 : 최현아 의원, 양동진 의원,
정홍준 의원, 유승현 의원,
신정란 의원, 이복남 의원,
이영란 의원

1. 개정이유

- 경술국치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합병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경술년(1910년) 8월 29일을 일컫는 말로
-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통치권을 빼앗긴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고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규정

2. 주요내용

- 국기 게양일에 경술국치일(매년 8월 29일)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5조제1항제4호)
- 조기 게양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5조제2항)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

【붙임 1】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술국치일(매년 8월 29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1. 제1항제4호의 날

2.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국기의 게양일) ① 법이 정 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 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천시 (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 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 style="padding-left: 40px;"><u><신 설></u></p> <p style="padding-left: 40px;"><u><신 설></u></p> <p>② (생 략)</p>	<p>제5조(국기의 게양일)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경술국치일(매년 8월 29일)</u></p> <p>② <u>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u></p> <p>1. <u>제1항제4호의 날</u></p> <p>2. <u>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순천시의회의원 최현아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공포일	부서
1	화천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2023. 6. 11.	자치행정과
2	광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2020. 7. 8.	행정지원과
3	괴산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2020. 5. 1.	총무과
4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2020. 1. 13.	총무과
5	공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2019. 11. 28.	행정지원과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2019. 6. 28.	총무과
7	태백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2017. 7. 7.	총무과
8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2017. 6. 16.	자치행정과
9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2016. 10. 20.	운영지원과
10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2016. 7. 14.	행정과
11	칠곡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2015. 12. 29.	총무과
12	철원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2015. 11. 3.	자치행정과
13	삼척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2015. 10. 8.	총무과
14	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2015. 4. 8.	총무과
15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2020. 10. 7.	총무과
16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2019. 9. 26.	자치행정과
17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2017. 2. 23.	총무과
18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2014. 5. 20.	총무과
19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2020. 9. 21.	행정지원과
20	대구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2018. 12. 20.	행정지원과
21	대구광역시 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2018. 10. 30.	행정지원과
22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2018. 7. 26.	총무과
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2018. 7. 1.	총무과
24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2022. 2. 11.	총무과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96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7. 11.

1. 개정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1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시 민간위원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단서 규정 신설하여 이를 명확화
- (안 제6조제1항)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뿐만 아니라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추가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5. 15. ~ 6. 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5. 9.(가족복지과-1403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5. 11.(기획예산실-643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5. 15.(순천시 공고 제2023-1142호)

순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문가”를 “민간전문가”로, “임명한다”를 “임명한다. 다만, 관련 민간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
 - 행정안전국 세정과 과장 문병태(☎ 749-6110)
 - 세무행정팀장 김석채(☎ 749-6115)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관련 법령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내부규정
-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397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7. 11.

1. 폐지이유

-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수면 여건 등의 문제 및 유사 돌봄 사업 증가로 업무의 효율성이 낮아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사업 일몰

2. 주요내용

-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

3. 폐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5. 31. ~ 6.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5. 24.(기획예산실-708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5. 31.(순천시 공고 제2023-1209호)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2013.09.16 조례 제1378호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1602호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9988쉼터“라 한다)이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노인을 말한다.
 -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 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거주가 필요하다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

제3조(등록신청 및 절차) ① 9988쉼터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등록신청서에 마을 이·통장 및 경로당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에 규정된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9988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9988쉼터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
2. 경로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일 것
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
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일 것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9988쉼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2.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은 9988쉼터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하며 항목별 지원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 : 분기별
2. 난방비 : 상·하반기 연 2회
3. 그 밖의 경비 : 신청 시

제7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9988쉼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전출·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
2. 9988쉼터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
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변경 신고 등) 9988쉼터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자·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변경 신고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78호, 2013.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02호, 2015.12.31>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97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7. 11.

1. 개정이유

- 청년 연령에서 제외된 46~49세를 중년층에 포함하여 새로운 인생 준비 지원
- 인생이모작센터 시설(강의실) 이용 제한 규정 신설로 공공건물 효율적 관리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등 변경 : “장년층” 을 “중·장년층” 으로
- 제2조제1호 중 “50세” 를 “46세” 로 개정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시설 이용 제한 조항 신설로 시설물 효율적 운영 관리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 기타 : 부칙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5. 15. ~ 6. 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4. 28.(기획예산실-5805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5. 10.(가족복지과-1406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5. 15.(순천시 공고 제2023-1121호)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를 “순천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50세” 를 “46세” 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시설 이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시설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목, 제6조제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호 및 제7조제3호 중 “장년층” 을 각각 “중·장년층”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장년층</u>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장년층</u>”이란 <u>50세</u>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p> <p>2. “<u>인생이모작</u>”이란 <u>장년층</u>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와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장년층</u>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u>장년층</u>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순천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u>중·장년층</u>-----</p> <p>-----</p> <p>-----.</p> <p>제2조(용어의 정의) -----</p> <p>-----</p> <p>-----.</p> <p>1. “<u>중·장년층</u>” --- <u>46세</u> -----</p> <p>-----.</p> <p>2. ----- <u>중·장년층</u>-----</p> <p>-----</p> <p>-----.</p> <p>제3조(시장의 책무) -----</p> <p>----- <u>중·장년층</u>-----</p> <p>-----</p> <p>-----.</p> <p>제4조(지원 사업) ---- <u>중·장년층</u> -</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6조(<u>장년층</u>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장년층</u>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이하 “지원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6조(<u>중·장년층</u>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 설치·운영) ① -----</p> <p>-----</p> <p>----- <u>중·장년층</u> -----</p> <p>-----</p> <p>-----.</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u>장년층</u>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장년층</u> 인생이모작 지원(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생략) 3. <u>장년층</u>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생략) 	<p><u>제6조의2(시설 이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시설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u> 2. <u>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u> 3. <u>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u> 4. <u>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u> 5. <u>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u>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 <u>중·장년층</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중·장년층</u> ----- ----- 2. (현행과 같음) 3. <u>중·장년층</u> ----- ----- 4. (현행과 같음)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태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977호
----------	--------

발의연월일 : 2023. 7. 11.

발의자 : 김태훈 의원, 최미희 의원,
정병희 의원, 유승현 의원,
박계수 의원, 신정란 의원,
정광현 의원, 장경원 의원

1. 개정이유

-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율을 상향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3조 ~ 안 제4조)
- 창업 및 경영 지원(안 제5조)
- 이차보전 및 소상공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안 제7조)
-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안 제8조)
-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안 제9조)
-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및 소상공인 단체 지원(안 제10조 ~ 안 제 11조)
-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안 제12조)
- 순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1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4조 ~ 안 제15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붙임 1】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순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 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 현황
2. 소상공인 고용 및 경영 현황
3.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창업 및 경영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지원
3. 업종 전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전환 등 경영개선 지원
4.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이차보전을 함에 있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5퍼센트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로 한다.

③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용자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소상공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선제적 예방·대비·대응과 함께 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4년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0조(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홍보 사후 관리
2. 지역 상권 조사, 분석
3. 소상공인 지원기관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상권 활성화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센터 운영 상황을 매년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관할 지역 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
2. 소상공인 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

제12조(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 ①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순천시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②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유공자 표창
2. 소상공인 관련 기념행사
3.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진흥에 관한 행사

제13조(순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른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

2. 순천시의회 의원

3.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제8조(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1인 자영업자¹⁾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 1인 자영업자 비중 : 약 77%(전국 통계)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 0.5%(전국 통계)
 - 순천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비중 : 0.03%(5건)
 - 계획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최대 3년간 지원 및 고용보험 가입률 1.5%(211건) 이상 확대, 매년 50건씩 신규 가입 추가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225	-44	-54	-65	-31	-31
세입(a)	-	-	-	-	-	-
세출(b)	225	44	54	65	31	31

4. 재원조달 방안 : 시비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5개년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별	합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비 고
소요예산	225	44	54	65	31	31	-
증감율(%)	-	100	22	20	△52	-	전년도 대비 증감율

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업주)

○ 2024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44,436,600		
민간경상 사업보조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44,436,600	○ 17,550원(월 평균 보험료)×12개월×(211건) = 44,436,600원	

○ 2025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54,966,600		
민간경상 사업보조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54,966,600	○ 17,550원(월 평균 보험료)×12개월×(211 + 50건) = 54,966,600원	

○ 2026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65,496,600		
민간경상 사업보조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65,496,600	○ 17,550원(월 평균 보험료)×12개월×(211 + 100건) = 65,496,600원	

○ 2027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31,59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31,590,000	○ 17,550원(월 평균 보험료)×12개월×(150건) = 31,590,000원	

○ 2028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31,59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31,590,000	○ 17,550원(월 평균 보험료)×12개월×(150건) = 31,590,000원	

6. 작성자 : 순천시의회의원 김태훈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

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2021. 6. 8.>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소상공인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80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이향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962호
----------	--------

발의연월일 : 2023. 6. 14.

발의자 : 이향기 의원, 오행숙 의원,
최병배 의원, 강형구 의원,
서선란 의원, 이복남 의원,
김영진 의원, 김태훈 의원,
최미희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증진, 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의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국고보조사업 등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전문임업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기타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제정안 : 붙임 1

4. 예산상황 : 붙임 2

【붙임 1】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증진, 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전문임업인”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독립가,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
5. “임업인 등”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2. 임업인 단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2.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
3. 임산물의 수출·가공 및 판매·유통 활성화, 직거래 소비 및 홍보
4.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산림관련단체 보조사업
5. 임업인 등의 산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자격증 취득교육 포함)·연수·행사 등에 대한 지원 사업
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조사·연구·홍보·체험 등) 및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
7. 분재·조경수 등 관련사업의 전시·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
8. 산림보호·산불예방·방지활동을 위한 홍보·교육·산림사업 등
9. 임업 생산 활동을 위한 퇴비 지원 사업
10.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조 례 명 :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지원범위)

-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시비 지원
- 그밖에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비 지원

○ 안 제5조(지원사업 등)

-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 임산물의 수출·가공 및 판매·유통 활성화, 직거래 소비 및 홍보,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산림관련단체 보조사업, 임업인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행사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등

3. 비용추계의 전제

- 안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102,577,817	-18,564,000	-19,492,200	-20,466,810	-21,490,150	-22,564,657
세입(a)	-	-	-	-	-	-
세출(b)	102,577,817	18,564,000	19,492,200	20,466,810	21,490,150	22,564,657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102,577	18,564	19,492	20,466	21,490	22,565
국 비	56,224	10,175	10,684	11,218	11,779	12,368
도 비	12,105	2,191	2,300	2,415	2,536	2,663
시 비	34,248	6,198	6,508	6,833	7,175	7,534

6.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소요예산 : 18,564백만 원/연

○ 산출기초

- 조림·숲가꾸기 사업 : 7,669백만 원
- 임도·사방사업 : 5,598백만 원
- 산불방지대책 사업 : 2,297백만 원
- 산림소득 지원사업 : 3,000백만 원

- 산림작물생산단지 및 특화작물 육성 145,500,000원×2종=291백만 원
-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등 2개사업 260,000,000원×2종=520백만 원
-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등 3개사업 20,000,000원×3종=60백만 원
-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1,802,000,000원×1식(1,300명)=1,802백만 원
- 목재문화지원센터 지원 외 3개사업 64,500,000원×4종=258백만 원
- 임업후계자 관리 및 임업인신문 보급 외 23,000,000원×3종=69백만 원

7. 협의사항 : 해당 없음

8.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9. 작성자 : 순천시의회 의원 이향기

10. 협조자 (2023.6.12.일 기준)

산림자원과	과 장	김 회 만(☎ 749-8734)
산림자원과	산림조성팀장	김 효 중(☎ 749-8735)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장	김 효 준(☎ 749-8741)
산림자원과	산림소득팀장	성 정 숙(☎ 749-8751)

참고 1

임업인후계자 등 관련 단체 현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순천시협의회

○ 회장 및 사무국장 : 노※성 / 서※민

○ 정회원수 : 98명

※ 순천시 임업후계자 : 452명

독립가 현황 : 23명

임업경영체 등록 현황 : 2,218명

산림소득단체 현황

(2023. 2. 1. 현재)

연번	단체명	대표	비고
1	사)한국조경수협회 전남동부지회	송※일	
2	순천만조경수 유통영농조합	서※주	
3	순천철쭉 영농조합법인	김※춘	
4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순천시협의회	노※성	
5	전남동부생약법인	홍※희	
6	순천조계산고로쇠 영농조합	장※규	
7	예향조경수 유통법인	박※규	

※ 자료 제공 협조자 (2023.6.12.일 기준)

산림자원과 과 장 김 회 만(☎ 749-8734)

산림자원과 산림소득팀장 성 정 숙(☎ 749-8751)

참고 2**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2022. 8. 8.	경제산업국 산림과
2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2022. 12. 23.	
3	강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19. 4. 12.	
4	거제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2021. 5. 13.	산림녹지과
5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0. 5. 14.	
6	고성군 임산물 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 조례	2022. 10. 21.	
7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5. 10.	녹지공원과
8	고창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	2019. 2. 1.	
9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계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21. 12. 6.	산림공원과
10	광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2023. 3. 2.	산림과
11	괴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2019. 8. 9.	
12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19. 10. 14.	산림과
13	나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2018. 8. 13.	
14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2021. 9. 30.	산림소득담당
15	단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17. 12. 29.	산림녹지과
16	밀양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23. 2. 20.	산림녹지과
17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21. 12. 31.	
18	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2017. 7. 3.	산림녹지과
19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22. 11. 18.	
20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3. 1.	
21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22. 4. 28.	녹지공원과
22	삼척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19. 3. 29.	산림과
23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1. 15.	산림공원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4	신안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2021. 12. 31.	
25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19. 12. 16.	
26	양구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21. 2. 10.	경제건설국 생태산림과
27	양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2020. 2. 26.	산림녹지과
28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17. 5. 10.	정원산림과
29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2020. 12. 15.	산림공원과
30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2022. 10. 21.	
31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2022. 4. 25.	
32	옥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21. 6. 17.	산림과
33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	2019. 12. 19.	산림녹지과 산림소득
34	울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6. 23.	녹지공원과
35	음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2021. 1. 5.	산림녹지과
36	의령군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2. 4. 20.	
37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2021. 12. 30.	
38	인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2023. 5. 25.	산림자원과
39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2019. 4. 12.	산림편백과
40	전라남도 임업 관리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	2016. 1. 7.	동부지역본부 산림보전과
41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2015. 10. 12.	
42	정읍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2023. 5. 10.	산림녹지과
43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2016. 6. 22.	산림녹지과
44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20. 12. 31.	농촌경제국(산림과)
45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	2022. 11. 16.	
46	진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2023. 2. 10.	산림녹지과
47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22. 1. 11.	
48	천안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18. 12. 21.	산림휴양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49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2. 30.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50	태안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2021. 7. 1.	환경산림과
51	통영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22. 12. 26.	
52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20. 4. 3.	산림과
53	포항시 임업관계자·산림관련단체 및 산촌 지원 조례	2020. 7. 14.	녹지과
54	하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2022. 4. 6.	
55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0. 30.	산림공원과
56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20. 4. 16.	
57	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2020. 4. 7.	산림녹지과
58	횡성군 임산물 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 조례	2023. 5. 23.	산림녹지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6., 2010. 2. 4., 2013. 3. 23., 2016. 5. 29., 2017. 3. 21., 2019. 1. 8., 2019. 12. 3.>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 3의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3의3.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 3의4.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독림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2. 4. 26.>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2022. 4. 26.>

산림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3. “전문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5.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6.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7. “산림소유자”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8. “특수산림사업지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

른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말한다.

9.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산림용 종자·묘목 또는 균류(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업을 말한다.

10.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4.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2021. 8. 17.>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지식농업”이란 지식의 생성, 저장, 활용, 공유를 통해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개발·개선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활동을 말한다.
2. “신지식농업인”이란 제1호의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농업법인
 - 다. 기타 농산물의 생산·저장·가공·유통 및 농업인의 조직화 등을 위해 사

회통념상 인정되는 분야로서 별표 1의 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3. "후보자"란 제2호 규정의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포함)가 시·도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한 자를 말한다.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978호
----------	--------

발의연월일 : 2023. 7. 11.

이복남 의원, 서선란 의원,
최미희 의원, 김태훈 의원,
박계수 의원, 최현아 의원,
발 의 자 : 이영란 의원, 유승현 의원,
장경순 의원, 강형구 의원,
오행숙 의원, 양동진 의원,
이향기 의원

1. 제정이유

-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 추진 및 우선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3. 제정안 : 붙임 1

4. 예산상황 : 붙임 2

【붙임 1】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 걷기 활성화 관련부서와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② 시장은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맨발걷기길 조성 사업 추진)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길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
5. 그 밖에 맨발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맨발걷기길의 우선 조성) ① 시장은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맨발걷기길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맨발걷기길 조성 사업 추진)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길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
5. 그 밖에 맨발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맨발걷기길의 우선 조성) ① 시장은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맨발걷기길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 계 획: 2024년부터 매년 300m 규모 맨발 걷기 산책로 2개소 조성
- 사업비: 300백만원/개소(시비 300)

참고 1**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순번	법령명	지역명	공포일자	부서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3. 6. 30.	체육진흥과
2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용인시	2023. 6. 30.	공원조성과
3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전주시	2023. 3. 7.	산림공원과
4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화성시	2023. 4. 14.	공원조성과
5	장수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장수군	2023. 7. 3.	보건사업과

참고 2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순천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시에 주소를 둔 실 거주자만 해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순천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록·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21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97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7. 11.

1. 개정이유

- 진입규제, 차별적규제, 가격규제 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함.

※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이 2023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확정되어 공정위에서 규제 개선과제의 정비대상으로 선정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343(2023.4.3.)호,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204(2023.2.20.)호와 관련

2. 주요내용

- (안 제8조) 제목
 - (기 존)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인력의 우선사용)”
 - (변 경)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인력의 사용)”
- (안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 (기 존) “지역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건설사업”
 - (변 경) “지역건설사업”
- (안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 (기 존) “생산제품, 장비, 인력(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노동자를 말한다) 등을 우선”
 - (변 경) “생산자재, 장비, 인력 등을”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5. 31. ~ 2023. 6.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5. 15.(가족복지과-1443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5. 12.(기획예산실-652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5. 18.(순천시 공고 제2023-1163호)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인력의 우선사용)”을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인력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건설사업”을 “지역건설사업”으로, “생산제품, 장비, 인력(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노동자를 말한다) 등을 우선”을 “생산자재, 장비, 인력 등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인력의 우선사용) 시장은 지역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 내 <u>생산제품, 장비, 인력(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노동자를 말한다)</u>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제8조(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인력의 사용) ----- <u>지역건설사업</u>----- ----- ----- ----- ----- <u>생산자재, 장비, 인력 등을</u> ----- ----- ----- -----.</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제17조(모범 건설업체 선정 등)

-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를 관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8조(수당)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건설산업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5. 작성자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정책팀장

강진숙

담당자

이동주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97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7. 11.

1. 개정이유

- 신규 조성된 부대시설을 관리 운영 대상에 추가하고
- 부대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관리 운영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호) 부대시설 정의에 신규 조성된 ‘족구장’ 추가
- (안 제4조제1항제4호) 사용허가 우선순위 명확히 규정
 - 4.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이 소재한 행정동 지역주민 등이 사용하는 경우
- (안 제10조제2항) 사용료 무료대상 시설에 ‘족구장’ 추가
- (안 제11조제1항제7호) 사용료 감면대상 문구 수정
 - 7.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이 소재한 행정동 지역주민 등이 사용하는 경우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5. 31. ~ 6.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5. 18.(가족복지과-1490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5. 24.(기획예산실-708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5. 31.(순천시 공고 제2023-1219호)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테니스장 등” 을 “테니스장, 족구장 등”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이 소재한 행정동 지역주민 등이 사용하는 경우

제9조제1항 본문 외 표 중 “모든 부대시설 4” 를 “모든 부대시설 6”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테니스장” 을 “테니스장, 족구장”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주민의 행사” 를 “주민 등이 사용하는 경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이하 “부대시설” 이라 한다)” 이란 인조잔디축구장, 생태학습장, 물사랑 학습체험관, 게이트볼장, <u>테니스장 등</u>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에 부수된 시설물을 말한다.</p> <p>2. ~ 4. (생 략)</p> <p>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사람이 둘 이상 경합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② (생 략)</p> <p>제9조(사용시간) ① 부대시설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별 특수사정(일출·일몰시간 변동 등)에 따라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 ----- -----.</p> <p>1.----- ----- ----- <u>테니스장, 족구장 등</u> -----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이 소재한 행정동 지역주민 등이 사용하는 경우</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사용시간) ① ----- ----- ----- -----.</p>

현 행				개 정 안			
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익년2월)	대상시설물	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익년2월)	대상시설물
주간	06:00~09:00	07:00~09:00	모든 부대시설 4개소	주간	06:00~09:00	07:00~09:00	모든 부대시설 6개소
주간	09:00~18:00	09:00~17:00	모든 부대시설 4개소	주간	09:00~18:00	09:00~17:00	모든 부대시설 6개소
야간	18:00~22:00	17:00~21:00	테니스장	야간	18:00~22:00	17:00~21:00	테니스장
<p>② (생 략)</p> <p>제10조(사용료) ① (생 략)</p> <p>② 생태학습장, 물사랑 학습체험관, 게이트볼장, 테니스장의 사용료는 무료 한다.</p> <p>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p> <p>1. ~ 6. (생 략)</p> <p>7.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이 소재한 행정동 지역 <u>주민의 행사</u></p> <p>8. ~ 9. (생 략)</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테니스장, 족구장</u>----- -----.</p> <p>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u>주민 등이 사용하는 경우</u></p> <p>8. ~ 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97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7. 11.

1. 개정이유

- 신규 신설급수 부과대상 범위 세부기준 및 단위사업비 명시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명확한 기준 적용과 원인자부담금 현실화

2. 주요내용

- 안 제4조 :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 (현행) 세부기준 없음
 - (변경) 대규모, 중규모 부과대상 세부기준 및 산식 마련
- 안 제5조 : 부담금 산정기준
 - (현행) 단위사업비 없음
 - (변경)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반영
- 안 제6조 : 부담금의 부과·징수
 - (현행) 협약서 작성 없음
 - (변경)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 협약서 작성
- 안 제13조 :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 (신설) 수도시설 유지관리 지장시설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인접 설치 금지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5. 31. ~ 6.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5. 17.(가족복지과-1475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5. 11.(기획예산실-640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5. 31.(순천시 공고 제2023-1195호)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한다”를 “구분하고,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 외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시설로서 급수구역에 위치하는 시설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5항 중 “15일” 을 “30일”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원인자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원인자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⑧ 원인자부담금(추가 공사비는 제외한다)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의 범위에서 네 차례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개시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 ⑨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⑩ 시장은 제9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 또는 이설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

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중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중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4조제1항 관련)

시설 유형별		부과대상 기준	수돗물 사용량 산 식
대규모 개발사업 (제4조제1항제1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중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사업단지 조성사업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5.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사업계획서 1일 사용량
중규모 개발사업 (제4조 제1항 제2호)	주거시설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다만,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은 제외)	$\text{세대수} \times 2.6 \text{인} / \text{세대} \times 0.383 \text{m}^3 / \text{일}$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	$\text{건축연면적}(\text{m}^2) \times 0.04 \text{m}^3 / \text{일}$
	교육연구 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다만, 유치원, 초·중·고등 학교 시설은 제외)	$\text{건축연면적}(\text{m}^2) \times 0.02 \text{m}^3 / \text{일}$
	의료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급 이상	$\text{건축연면적}(\text{m}^2) \times 0.03 \text{m}^3 / \text{일}$
	판매·유통 및 영업시설	연면적 1,000㎡이상	$\text{건축연면적}(\text{m}^2) \times 0.025 \text{m}^3 / \text{일}$
	공장건축	연면적 1,500㎡이상	$\text{건축연면적}(\text{m}^2) \times 0.025 \text{m}^3 / \text{일}$
	기타시설	연면적 2,000㎡이상	$\text{건축연면적}(\text{m}^2) \times 0.02 \text{m}^3 / \text{일}$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text{총사업비}/\text{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
--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구 분	금 액
단위사업비(㎥/일)	1,217,000원

2.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text{순자산/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 자산-기부금 누계액)-시설부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으로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구 분	금 액
단위사업비(m ³ /일)	1,028,000원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소규모 사용자 구경별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구경(mm)	부과금액 (단위:원)		비 고
	읍·면지역	동 지역	
15	68,000	248,000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	165,000	689,000	
25	262,000	1,103,000	
40	799,000	3,323,000	
50	1,530,000	5,102,000	
80	3,709,000	12,369,000	
100	6,743,000	21,084,000	
150	12,066,000	37,701,000	
200	25,056,000	65,268,000	
250	35,798,000	88,021,000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CA\sqrt{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CA\sqrt{2gh}(\text{오리피스공식})$$

$$- Q2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ap^{1/2}$$

Q1 = 초당 손실수량(m ³ /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m ³ /hr)
C = 유량계수 (Ca ×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 C = 0.666 × 0.97 = 0.64	
A = 면적(m ²) = 10,000a(cm ²)	g = 중력가속도(9.8m/sec ²)
H = 수두(m) = 10p	p = 수압(kg/cm ²)
(수두 10m는 수압1kg/cm ² 에 해당)	

다. 수압에 따른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면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times L$$

Q = 손실수량(m ³)	A = 면적(m ²)
L =연장 (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의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u>구분한다</u>.</p> <p>1. <u>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및 송수시설·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u></p> <p>2. <u>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시설·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도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u></p> <p>3. <u>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경우에</u></p>	<p>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 ----- ----- <u>구분하고,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u>.</p> <p>1. <u>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u></p> <p>2. <u>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 외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에 신규로 수도물을 공급할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u></p> <p>3. <u>제1호 및 제2호 외의 시설로서 급수구역에 위치하는 시설에 수</u></p>

현행	개정안
	<p><u>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⑧ 원인자부담금(추가 공사비는 제외한다)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의 범위에서 네 차례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개시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⑨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⑩ 시장은 제9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제13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u></p>

현행	개정안
<p>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p> <p>제14조 (생략)</p>	<p>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 또는 이설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p> <p>제14조(준용) ----- ----- ----- 「지방세기본법」----- ----- -----.</p> <p>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p>

현 행

<신 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도물 사용량}$$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도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도물 1㎡당 사업비
 - 나. 신설 또는 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도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 가. 1인 1일 최대급수량 = 1인 1일 급수량 × 침두계수
 - 나. 1인 1일 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 * 침두계수 : 최대 급수 시의 여유율
3.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개 정 안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4조제1항 관련)

시설 유형별	부과대상 기준	수도물 사용량 산 식	
대규모 개발사업 (제4조제1항제1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중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사업단지 조성사업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5.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사업계획서 1일 사용량	
중규모 개발사업 (제4조제1항제2호)	주거시설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다만,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은 제외)	세대수×2.6인/세대×0.363㎡/일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	건축연면적(㎡)×0.04㎡ / 일
	교육연구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다만, 유치원, 초·중·고등 학교 시설은 제외)	건축연면적(㎡)×0.02㎡ / 일
	의료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급 이상	건축연면적(㎡)×0.03㎡ / 일
	판매·유통 및 영업시설	연면적 1,000㎡이상	건축연면적(㎡)×0.025㎡ / 일
	공장건축	연면적 1,500㎡이상	건축연면적(㎡)×0.025㎡ / 일
	기타시설	연면적 2,000㎡이상	건축연면적(㎡)×0.02㎡ / 일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도물 사용량}$$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도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도물 1㎡당 사업비
 -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구 분	금 액
단위사업비(㎡/일)	1,217,000원

2.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현 행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순자산/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부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그 밖의 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나. 그 밖의 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제}$$

·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단위 : 원)

계량기 구경별	분 담 금 액		비고
	읍·면 지역	동 지역	
13mm	50,000	180,000	
20mm	120,000	500,000	
25mm	190,000	800,000	
40mm	580,000	2,410,000	
50mm	1,110,000	3,700,000	
75mm	2,690,000	8,970,000	
100mm	4,890,000	15,290,000	
150mm	8,750,000	27,340,000	
200mm	18,170,000	47,330,000	
250mm	25,960,000	63,830,000	

- 가.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은 각 세대별로 구분 산정한다.
- 나. 급수관의 구경확대 개조공사는 기 설치된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징수한다.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단체)에서 건립 또는 관리하는 비영리 공공용 건축물 등은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 정 안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text{순자산/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 자산-기부금 누계액)-시설부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으로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구 분	금 액
단위사업비(m/일)	1,028,000원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소규모 사용자 구경별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구경(mm)	부과금액 (단위:원)		비 고
	읍·면지역	동 지역	
15	68,000	248,000	
20	165,000	689,000	
25	282,000	1,103,000	
40	799,000	3,323,000	
50	1,530,000	5,102,000	
80	3,709,000	12,369,000	
100	6,743,000	21,084,000	
150	12,066,000	37,701,000	
200	25,056,000	65,268,000	
250	35,798,000	88,021,000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현행	개정안																																				
<p>[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p> <p>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CA\sqrt{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CA\sqrt{2gh}$(오리피스공식) - $Q2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 \times 9.8 \times 10^3 \times 3600} = 3.2ap^{1/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Q1$ = 초당 손실수량(m^3/sec)</td> <td style="padding: 2px;">$Q2$ = 시간당 손실수량 (m^3/hr)</td> </tr> <tr> <td style="padding: 2px;">C = 유량계수 ($Ca \times Cv$)</td> <td style="padding: 2px;">Ca = 수축계수 (0.666적용)</td> </tr> <tr> <td style="padding: 2px;">Cv = 유속계수 (0.97적용)</td> <td></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2px;">$\therefore C = 0.666 \times 0.97 = 0.64$</td> </tr> <tr> <td style="padding: 2px;">A = 면적(m^2) = 10,000a(cm^2)</td> <td style="padding: 2px;">g = 중력가속도($9.8m/sec^2$)</td> </tr> <tr> <td style="padding: 2px;">H = 수두(m) = 10p</td> <td style="padding: 2px;">p = 수압(kg/cm^2)</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2px;">(수두 10m는 수압1kg/cm²에 해당)</td> </tr> </table> <p>다. 수압에 따른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계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면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p> <p>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times L$</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Q = 손실수량(m^3)</td> <td style="padding: 2px;">A = 면적(m^2)</td> </tr> <tr> <td style="padding: 2px;">L =연장 (m)</td> <td></td> </tr> </table> <p>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의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p>	$Q1$ = 초당 손실수량(m^3/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m^3/hr)	C = 유량계수 ($Ca \times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therefore C = 0.666 \times 0.97 = 0.64$		A = 면적(m^2) = 10,000a(cm^2)	g = 중력가속도($9.8m/sec^2$)	H = 수두(m) = 10p	p = 수압(kg/cm^2)	(수두 10m는 수압1kg/cm ² 에 해당)		Q = 손실수량(m^3)	A = 면적(m^2)	L =연장 (m)		<p>[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p> <p>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CA\sqrt{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CA\sqrt{2gh}$(오리피스공식) - $Q2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 \times 9.8 \times 10^3 \times 3600} = 3.2ap^{1/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Q1$ = 초당 손실수량(m^3/sec)</td> <td style="padding: 2px;">$Q2$ = 시간당 손실수량 (m^3/hr)</td> </tr> <tr> <td style="padding: 2px;">C = 유량계수 ($Ca \times Cv$)</td> <td style="padding: 2px;">Ca = 수축계수 (0.666적용)</td> </tr> <tr> <td style="padding: 2px;">Cv = 유속계수 (0.97적용)</td> <td></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2px;">$\therefore C = 0.666 \times 0.97 = 0.64$</td> </tr> <tr> <td style="padding: 2px;">A = 면적(m^2) = 10,000a(cm^2)</td> <td style="padding: 2px;">g = 중력가속도($9.8m/sec^2$)</td> </tr> <tr> <td style="padding: 2px;">H = 수두(m) = 10p</td> <td style="padding: 2px;">p = 수압(kg/cm^2)</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2px;">(수두 10m는 수압1kg/cm²에 해당)</td> </tr> </table> <p>다. 수압에 따른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계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면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p> <p>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times L$</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Q = 손실수량(m^3)</td> <td style="padding: 2px;">A = 면적(m^2)</td> </tr> <tr> <td style="padding: 2px;">L =연장 (m)</td> <td></td> </tr> </table> <p>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의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p>	$Q1$ = 초당 손실수량(m^3/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m^3/hr)	C = 유량계수 ($Ca \times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therefore C = 0.666 \times 0.97 = 0.64$		A = 면적(m^2) = 10,000a(cm^2)	g = 중력가속도($9.8m/sec^2$)	H = 수두(m) = 10p	p = 수압(kg/cm^2)	(수두 10m는 수압1kg/cm ² 에 해당)		Q = 손실수량(m^3)	A = 면적(m^2)	L =연장 (m)	
$Q1$ = 초당 손실수량(m^3/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m^3/hr)																																				
C = 유량계수 ($Ca \times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therefore C = 0.666 \times 0.97 = 0.64$																																					
A = 면적(m^2) = 10,000a(cm^2)	g = 중력가속도($9.8m/sec^2$)																																				
H = 수두(m) = 10p	p = 수압(kg/cm^2)																																				
(수두 10m는 수압1kg/cm ² 에 해당)																																					
Q = 손실수량(m^3)	A = 면적(m^2)																																				
L =연장 (m)																																					
$Q1$ = 초당 손실수량(m^3/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m^3/hr)																																				
C = 유량계수 ($Ca \times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therefore C = 0.666 \times 0.97 = 0.64$																																					
A = 면적(m^2) = 10,000a(cm^2)	g = 중력가속도($9.8m/sec^2$)																																				
H = 수두(m) = 10p	p = 수압(kg/cm^2)																																				
(수두 10m는 수압1kg/cm ² 에 해당)																																					
Q = 손실수량(m^3)	A = 면적(m^2)																																				
L =연장 (m)																																					

